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8년 2월 11일

나. 회부일자 : 1998년 2월 11일

3. 제안이유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것임.

4. 주요골자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을 신설하는 것으로

-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안 제28조의 4)

5. 검토의견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사단법인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가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 부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